

교회법



한국교회법연구소
THE KOREA INSTITUTE OF CHURCH LAW

통권 제24호

학술논문 / 월간

www.churchlaw.co.kr law134@naver.com (031) 984-9134



- 교회와 교인의 종교자유에 관한 고찰
- 빛과진리교회를 중심으로- 소재열 목사
- 칼빈(J. Calvin)의 4직제와 향존직에 대한 고찰 _ 김순정 목사
-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과잉금지원칙 _ 김대준 변호사
- 서평 : 법 앞에 선 한국교회 _ 권창영 변호사



한국교회법연구소
THE KOREA INSTITUTE OF CHURCH LAW



월간

교회법

통권 24호

발행인 : 소재열

발행처 : 한국교회법연구소

등록 : 김포,라00029

인쇄인 : 한명훈

발행일 : 2023. 8. 1.

주소 : 김포시 태장로 780
(베네치아아침 1208)

전화 : (03) 984-9134



- 교회와 교인의 종교자유에 관한 고찰
- 빛과진리교회를 중심으로- 소재열
- 칼빈(J. Calvin)의 4직제와 향촌직에
대한 고찰 _ 김순정
-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과잉금지원칙
_ 김대준
- 서평 : 법 앞에 선 한국교회 _ 권창영

교회를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구분한다. 유형교회는 조직과 정치가 필요하고 교회법이 필요하다. 칼빈(Jean Calvin)의 제자 베자(Theodore. Beza)는 “사탄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의를 뒤엎기보다는 그보다 쉬운 교회정치를 뒤엎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이 말은 실로 옳았다. 교회정치와 교회헌법이 사단의 이용물이 되면서 교회는 견잡을 수 없는 분쟁과 분열로 이어진다. 교회헌법이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 또는 교권 획득의 도구로 전락하여가고 있다.

심지어 교회법과 교회정치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와 발전은 언제나 뒷전이었고 무관심이었다. 그 이유는 성경과 신학에 대한 다양한 발전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에 대한 폭넓은 실천적 이해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 이외에 다른 학문을 연구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이게 하며, 성경신학만이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하며, 권위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교회헌법 또는 교회정치에 대한 연구를 사문화시켰으며,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규정짓는 교회법적 질서에 혼란을 가져왔다.

목사가 되기까지 공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한 번도 교회법 내지는 국가법과 관련된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목회 전선에 뛰어든다. 그러나 목회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뿐이며, 교회는 더욱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가법과 관계 속에서 법률적인 이해 부족으로 교회가 분쟁에 휩싸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 교회법 이해는 목회에 필수 요건이다. 교회법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교회를 불법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교회 역시 적법한 절차를 위해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교회 분쟁의 한 중앙에서 건강한 교회를 위한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앞장섰다. 그동안 관심과 기도를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교회와 교인의 종교자유에 관한 고찰

-대상교회 : 빛과진리교회를 중심으로-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목 차

1. 서론- 문제제기
2. 종교단체인 교회와 교인의 특징
 - 1) 종교의 자유
 - 2) 교회 교인의 종교자유
 - 3) 교인이 교회 가입과 탈퇴는 자유
 - 4) 교회 교인의 사용·수익
3. 교단 헌법의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 1) 교단 헌법(장로회 헌법)
 - 2) 교인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
 - 3) 교회의 신앙 교육의 자유
 - 4) 성경의 모범적 교육
4. 대상교회의 훈련 프로그램
 - 1) 종교 내부의 교리적 훈련 프로그램
 - 2) 상징적 의미와 행위의 관계
 - 3) 혐오스런 종교의식의 자유
- 5 결론

〈요약〉

교인들은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의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가 있다. 이러한 자유에 근거하여 종교단체인 교회를 통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누린다. 그러한 신념은 자신의 양심대로 특정 교회에 가입하여 국가의 실정법과 교회의 자치법규에 의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교리적 신념에 반할 때 언제든지 그 교회를 탈퇴할 수 있다. 신자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의 자유가 있다면 교회는 교회 설립목적과 신학적, 교리적 입장에 근거하여 신앙훈련을 통해 교회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교인의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특히 대상교회 교리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 피해를 보게 한 교회와 관련 담당자. 교회 대표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전에 자신의 종교적, 교리적 신념,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따른 행위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국가 사법기관에 상대방을, 교회 대표자를 범죄자로 처벌해 달라는 것은 과연 정의 관념에 부합한 것인지 고민하게 하는 사건이다. 교회는 일반 여타 단체와는 다른 독특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 소재열 목사 / 총신대학교 목회박사원, 미국 리폼드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D.Min., 교회법), 칼빈대학교 (Ph.D., 한국교회사), 조선대학교 법학석사, 법학박사(민법), 현재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사망교회 담임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헌법 개정위원이며, 칼빈대학교 겸임교수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회법을 강의한 바 있다. 저서로 『합리적인 당회운영』, 『장로교 신학적 전통』, 『교회 정관법 총칙』, 『장로회 헌법 정치 해설』, 『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해설』, 『교회의 표준 회의법』, 『교회의 적법절차』, 『신비의계시 로마서』, 『법 앞에 선 한국교회』 외 다수가 있다.

1. 서론- 문제제기

승려가 죽으면 영결식이 끝난 후에 시신을 불로 태우는데 이런 화장(火葬) 의식을 불가(佛家)에서는 다비식(荼毘式)이라 부른다. 다비식은 일반 장례 의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윤회 사상으로 한국에만 남아 있는 유일한 불교 문화이며 교리이다.

승려들의 죽음을 입적(入寂) 또는 열반(涅槃)이라 하는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을 지닌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다비식은 공개된 장소에서 시신을 불로 태우는 문화를 사법부가 미풍양속이나 사회 통념에 반한다며 이에 대해 형사 건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면 불교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는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 그리스도교는 지난 2천 년 동안 신의 계시로 받아들인 경전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성경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훈련을 2천 년 동안 유지해 왔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증으로 들면서 “오늘날 우리도 그런 인물의 모범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형식논리의 적용으로 훈련이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이후 일제 강점기에 기독교의 신앙을 파괴하는 신사참배와 성경에 대한 신의 계시성을 말살하려는 일제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신사참배는 성경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 확신한 자들이 있는 반면, 그것은 성경을 위반한 행위이며, 신앙양심에 위배된다며 죽음을 무릅쓰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자들이 있었다.

성경에 등장한 각 인물의 모범적 행위를 따라

야 하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를 가르치고 훈련해 왔다. 그러나 그 가르침에 자신의 신앙 양심과 부합할 때는 그것이 비록 죽음의 길일지라도 순응했다.¹⁾ 자신의 양심과 반할 때는 스스로 거부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신앙양심과 신념에 맞은 교회로 옮겨 신앙의 자유를 누려왔다. 이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기독교 종파 가운데 최대 종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인 빛과진리교회 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한 모범적 실천을 위해 훈련 예시 표에 의해 훈련을 받다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며 형사처벌을 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문제를 소위 피해자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와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성경 교육적 훈련과의 관계를 살피는데, 본 글의 목적이 있다.

본 글은 먼저 종교단체인 교회와 교인의 특징을 논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속된 종교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의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대성교회의

1)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았다. 교회는 로마에 의해 많은 핍박을 받았다.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순교의 길을 갔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먹혀 죽는 핍박과 순교는 그 시대 신앙을 가진 자들의 고통이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은 86세가 되어 체포되어 처형을 받았다. 황제 숭배만 하면 처형은 면해 준다는 말에도 그는 기꺼이 그 순교의 길을 택했다. 관리가 계속하여 “맹세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욕하라”하고 말하자, 폴리갑은 대답했다. “86년 동안 나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훈련 프로그램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피해자로 등장한 대상교회 교인으로서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은 대상교회 관련 문제로 인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문 속에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교인들의 종교적 생활에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것”²⁾에 의해 피해자의 종교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종교단체인 교회와 교인의 특징

1) 종교의 자유

우리 헌법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³⁾ 다양한 가치관 내지 종교적 신념은 헌법적 가치와 이념, 헌법 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한 존중한다. 종교적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로이 결합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에 의해 오늘날 종교단체인 교회가 존립하게 되었다.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는 자유가 포함된다. 그리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⁴⁾

2) 교회 교인의 종교자유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택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고단1736 판결. 판결서, 21.

3)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4)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할 자유, 특정 종교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와 자신이 신봉하는 신앙 교리와 다를 때 그 교회를 떠나 자신이 신봉하는 신앙교리에 따른 교회에 가입하여 자신의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종교단체인 교회는 그 구성원인 회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자주 변경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비법인사단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⁵⁾ 교회는 교단 소속 관계와는 사법상 계약의 영역이지만,⁶⁾ 비법인사단으로서 교회의 자치법규는 계약이 아닌 자치규범이다.⁷⁾ 따라서 교회 교인은 자치법규를 제정할 당시의 교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가입한 모든 교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교인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한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의해 특정 교회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입하여 종교단체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가입 청원과 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입한 교인이 종교적 자유의 원리에 따라 해당 교회를 탈퇴하고 다른 교회에 가입할 수 있다. 탈퇴할 때 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종교적 자유를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3) 교인이 교회 가입과 탈퇴는 자유

특정한 사람이 특정 교회에 가입을 위한 청원과 교회의 승인에 의하여 교회 총유권자로서 권리

5)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기독교 교리를 널리 전파하려는 의도에서 교회가 교인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여를 허용하는 결과 교회의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특정 시점에서 교회 구성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6)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7)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참조.

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개인적으로 가입과 탈퇴는 자신의 종교적 자유와 신념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기독교 교리를 널리 전파하려는 의도에서 교회가 교인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여를 허용하는 결과 교회의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특정 시점에서 교회 구성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교인들은 자신이 신봉하는 교리에 좇아 자유로이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며,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언급했다.

교인들은 자신이 신봉하는 교리에 좇아 자유로이 교회를 선택하거나 또는 선택하였던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종교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적법하게 교단변경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에 반대하는 교인들로서도 자신이 원하는 교단 소속 교회를 찾아감으로써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유지할 수 있다.⁹⁾

대상교회 1심 판결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은 ‘교인들이 자신이 신봉하는 교리에 좇아 자유로이 교회를 선택하거나 또는 선택하였던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종교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에 부합한다.

피고인 김명진이 고안한 이 사건 교회의 교리는

‘리더십이 곧 로드십’이고 가르침을 잘 따르면 ‘완전한 사람(Whole man)’ 될 수 있어 결국 리더가 되는 것이 완전한 사람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이 사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교인들의 종교적 생활에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것인 점.¹⁰⁾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교회의 교리”라고 언급하고 있다. 대상교회 이 사건 피해자는 이러한 교리에 좇아 대상교회에 계속 출석하여 관련 훈련을 받을 것인지는 순전히 본인의 종교적 자유에 의해 결정된다. 그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교리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아니할 경우, 대상교회를 탈퇴하여 자신의 종교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배타적 권리이다.

1심 판결서에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교인들의 종교적 생활에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것인 점”은 대상교회를 떠나고 떠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종교적 자유에 해당하며, 대상 교회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교리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계속 이러한 훈련에 임했다는 것은 본인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신앙양심에 따른 자의적 판단의 신앙행위라 볼 수 있다.

4) 교회 교인의 사용·수익

교인이 해당 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자치법규를 자신의 규범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자치법규는 모든 구성원을 구속한다. 교인의 권리가 주어지면 해당 교회의 자치법규(정

8)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9)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고단1736 판결. 판결서, 21쪽.

관)에 따라 교인들은 교회재산을 총유(총유(민법 제275조-제277조)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¹¹⁾ 여기 사용·수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행위이며, 더 나아가 교인에게 주어진 각종 지위를 비롯한 포괄적 가치를 수익으로 얻게 된다.

교인이면 자치법규에 따라 사용·수익을 얻기 위하여 기본적인 각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용·수익권을 가진다. 이러한 사용·수익권은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이다.

3. 교단 헌법의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1) 교단 헌법(장로회 헌법)

대상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 소속한 교회이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들의 입국은 1884. 9. 20. 알렌 선교사의 입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어 교회가 설립되었고, 1907년에 최초로 ‘대한국예수교장로회 노회’(독노회)가 조직되었으며, 1912년에 이르러 노회의 상위 기관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51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측과 분열, 1951년 기장 측과 분열, 195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이 분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상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 소속한 교회이다. 대상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이하 ‘장로회 헌법’으로 표기)을 자치법규에 준한 규범으로 삼고 있다. 그 헌법은

도리적 헌법인 교리인 12신조와 대소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관리적 부분인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2) 교인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

장로회 헌법 정치편에 의하면 장로회 정치원리로 제1조 양심의 자유와 제2조 교회의 자유가 있다. 대상교회는 이러한 교단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1조 양심 자유에는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 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모든 구성원은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에 따라 과분한 권리를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과분한지는 본인의 판단이 근거가 된다. 대상교회 모든 교인은 교회 등 누구로부터 강요된 행위에 대해 자신이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결정권에 따른다. 받아들였다든 것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의한 자기표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3) 교회의 신앙 교육의 자유

제2조 교회 자유는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

11)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이하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표기함.

유권이 있다.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뿐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교회 자유에 의해 대상교회는 교인의 지위 득상, 권리의무, 직분자 구분, 자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신앙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교회 자유’가 있다.

4) 성경의 모범적 교육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모범으로 제시한다. 성경의 사건이나 인물을 긍정적인 면에서 또는 부정적인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의 해야 할 모범 또는 하지 말아야 할 모범으로 제시하는 교육은 기독교의 성경적 교육과 훈련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효과적인 교육과 훈련 등을 포함한 설교를 ‘모범적 설교’(Exemplary Preaching)라고 한다.

4. 대상교회의 훈련 프로그램

1) 종교 내부의 교리적 훈련 프로그램

대상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교단의 신학적 견해와 정치적 원리에 의해 운영된 교회이다. 교인 지위를 얻기 위해 입교되어야 한다.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일 경우, 입교식과 세례를 받은 자를 교인으로 입교하여 책임 있는 공동의회(교인총회) 회원이 된다. 세례를 받은 자에만 장로, 집사, 권사가 되고, 전 교인을 상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앙교육을 시행한다. 대상교회의 모범적 신앙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까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간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린도후서 6:1-10)

이와 같은 성경을 통해 대상교회는 29가지 기본 훈련을 시행하였다.

1. 무엇에든지, 2. 아무에게도, 3. 많이 견디는 것, 4. 환난, 5. 궁핍, 6. 곤란, 7. 매 맞음, 8. 간힘, 9. 요란한 것, 10. 수고로움, 11. 자지 못함, 12. 먹지 못함, 13. 깨끗함, 14. 지식, 15. 오래 참음, 16. 자비함, 17. 성령의 강화, 18. 거짓 없는 사랑, 19. 진리의 말씀, 20. 하나님의 능력, 21. 영광과 욕됨, 22.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23.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24.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25. 죽는 자 같으나 살고, 26.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음, 27.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함, 28.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함, 29.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대상교회는 종교 내부적인 교리에 근거한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한다. 그러한 교육을 형법의 잣대로 판단하여 범죄로 단죄한다면 한국 교회 많은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반대한 일부 교인들이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등 소송은 보편화될 것이다. 교회는 종교 문제에 대한 사법 심사의 대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할 뿐이다.

2) 상징적 의미와 행위의 관계

기독교는 성경을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실천적 행위의 근거로 삼는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때로는 의미적·상징적으로 해석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자.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29-30).

위와 같은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죄를 지으면 눈을 빼야 하고 손이 죄를 범하면 손을 절단하라고 한다. 실제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를 해석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할 때 의미적·상징적인 해석을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마가복음 16:17-18).

이 말씀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라고 한다.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 역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할 때에 의미적·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대상교회 훈련 프로그램은 고린도후서 6:1-10 절 말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모범에 대한 말씀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대변 사건”은 “대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규범화, 규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오직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의 극한 삶 속에서 인내하는 삶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훈련이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는 교육훈련은 우리 기독교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극한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는 훈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혐오스러운 일들은 이미 전술한 대로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3) 혐오스러운 종교의식의 자유

혐오스러운 종교의식의 자유에 관한 충남대학교 법학대학원대학원 교수의 다음 글을 인용해 본다.¹²⁾

미연방 대법원은 1993년의 Church of Lukumi Babalu Aye v. Hialeah 판결에서, 혐오스러운 종교의식일지라도 종교의 자유로서 보호될 수 있

12) 윤중행, “형법과 종교”, 『경희법학』 제55권 제1호, 82-83.

다고 판시하였다. Florida 주 Hialeah 시에 소재한 Lukumi Babalu Aye 교회는 아프리카계의 쿠바 종교인 산테리아(Santeria)교 의식을 행하였는데, 헌물의 의미로 동물을 희생하였다. 이 교회는 장례식이나 치유의 의식을 제하곤 모든 종교의식에서 동물의 경동맥을 끊어 살해하여 요리되고 먹었는데, 당시 하이얼리어(Hialeah)시의 조례에서는 당국이 혐오스럽고 불쾌하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종교의식을 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동 교회는 조례가 미연방 헌법 수정 제1조의 종교활동의 자유에 반한다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과 지방항소법원은 중대한 국가적 이익(the 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s)을 위한 것으로서 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more narrower restrictions)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하이얼리어시의 조례는 중립적이지 못하고 중대한 국가적 이익(the 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s)을 위한 덜 제한적인 수단의 요건(narrowly tailored to advance that interest)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¹³⁾

미연방 대법원은 1993년의 Church of Lukumi Babalu Aye v. Hialeah 판결 내용이다. 플로리다주 하이얼리어시에 위치한 Lukumi Babalu Aye 교회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하이얼리어(Hialeah)시의 조례에 의하면 혐오스럽고 불쾌하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종교의식을 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원고 Church of the Lukumi Babalu Aye는 피고 Hialeah시를 상대로 관련 조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연방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 행사조항 (Free Exercise Clause)을 위반한다며 이를 파기하였다.

5. 결론

교인들은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의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가 있다. 이러한 자유에 근거하여 종교단체인 교회를 통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누린다. 그러한 신념은 자신의 양심대로 특정 교회에 가입하여 국가의 실정법과 교회의 자치법규에 의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교리적 신념에 반할 때 언제든지 그 교회를 탈퇴할 수 있다. 신자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의 자유’가 있다면 교회는 교회 설립목적과 신학적, 교리적 입장에 근거하여 신앙훈련을 통해 교회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교회의 자유’가 있다. 교인의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특히 대상교회 교리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 피해를 보게 한 교회와 관련 담당자. 교회 대표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전에 자신의 종교적, 교리적 신념,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따른 행위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국가 사법기관에 상대방을, 교회 대표자를 범죄자로 처벌해달라는 것은 과연 정의 관념에 부합한 것인지 고민하게 하는 사건이다. 교회는 일반 여타 단체와는 다른 독특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13) Church of Lukumi Babalu Aye v. Hialeah, 508 U.S. 520-546 (1993)

칼빈(J. Calvin)의 4직제와 항존직에 대한 고찰

김순정 목사 (말씀사역원 본부장, 새사랑교회)

목 차

- | | |
|------------------------|----------------------------|
| 1. 서론 | 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나타난 항존직 |
| 2. 칼빈의 4직제 | 1) 칼빈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직제 차이점 |
| 1) 「기독교강요」 초판(1536) | 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항존직 |
| 2) 「기독교강요」 최종판(1559) | 4. 결론 |
| 3) 주석과 설교집에 나타난 칼빈의 직제 | |
| 4) 교회법에 나타난 칼빈의 직제 | |

<요약>

종교개혁자이며 장로교 정치 체계를 세운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와 주석, 설교집, 교회법에서 4직제를 명시하였다. 즉 목사, 교사, 장로, 집사직이 바로 그것이다. 칼빈은 이 4직제를 교회의 항존직으로 이해했다. 그의 신학과 정치 체계를 따르는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칼빈이 주장한 4직제가 아니라 항존직으로 목사, 장로, 집사 3직제 혹은 장로(목사), 집사 2직제를 주장한다. 그것은 교사직의 가르치는 직무가 목사직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칼빈의 「기독교강요」 초판(1536)과 최종판(1559), 그의 주석과 설교집, 교회법에 나타난 4직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나타난 항존직 즉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 김순정 목사 / 한국성서대학교 졸업(신학, B.A.),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수학,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목회학, M.Div.),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조직신학, Th.M.), 말씀사역원 본부장, 새사랑교회 시무

1. 서론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장로회 정치를 택한 교파이다. 장로회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¹⁴⁾

장로회 정치는 아주 독특하며, 성경에 근거한 정치 체제이다. 교황을 세우고 교황의 전체 통치 아래 교회를 관리하는 로마 가톨릭교나 희랍 정교회의 교황정치 제도와는 전혀 다르다. 또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감독교회나 감리교회의 감독정치와도 다르다. 뿐만 아니라 각개 지교회가 자유로 행정을 하는 자유정치와도 다르다. 또 각 지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 조직된 연합회가 있어 유일한 문제는 논의하지만 산하 교회에 명령을 하거나 주관하는 권한이 없고 모든 치리하는 일, 권징과 예식, 도리 해석은 각 교회가 자유롭게 하는 조합정치와도 다르다.

이렇게 독특한 장로회 제도는 모세(출 30:16; 18:25; 민 11:16)와 사도(행 14:23, 18:4; 딤후 1:5; 벧전 5:1; 약 5:14)때에 일찍 있던 성격적 제도이다. 또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제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 장로회 정치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삼는다.¹⁵⁾

앞에 정의해서 언급했듯이 장로회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세운 치리하는 장로와 교인들이 청빙투표를 통해 노회에 청원하여 파송받은 목사가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주관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이다.

장로라는 직제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존재하여 왔다. 장로(presbyter)는 구약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70인의 장로라 소개가 된다(민 11:6). 모세가 물을 위해 반석을 칠 때 그 목격자들이 바로 이 장로였다(출 17:5-6).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을 때 장로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통치적 기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

구약성경에는 장로라는 단어가 자켄, 가돌 등으로 나타난다. 자켄(זקן)은 ‘연장자, 장로’ 등의 의미이다.¹⁷⁾ 가돌(גדול)은 ‘손 위의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등을 의미한다.¹⁸⁾ 또한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택함받은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위한 봉사자들로 장로 직분을 세우게 된다. 2세기에 교회는 장로와 감독이 예배를 인도하고 선지자의 직분, 사도의 직분은 사라지게 된다. 70인경(LXX)은 구약의 장로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프레스비테로스(πρεσβυτερος)로 번역한다. 이 단어는 ‘나이가 든 사람, 손윗 사람, 공직에 있는 사람, 영광을 얻을 자’ 등으로 번역한다.¹⁹⁾ 신약에서 처

16) 서창원, 『장로교회의 역사와 신앙』, (서울:진리의 깃발, 2003), 16.

17) F. Brown, S. R. Driver, C.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BDB)* (Oxford: Clarendon, 1907), זקן.

18) F. Brown, S.R. Driver, C.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BDB)*, גדול.

19) W. Bau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revised and edited by F. William Dank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πρεσβυτερος.

1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총론.

http://gapck.org/sub_06/sub05_01.asp

1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총론.

http://gapck.org/sub_06/sub05_01.asp

음 장로가 소개된 곳은 예루살렘 공회였다(행 15:2, 5). 그러다 교회가 발전하면서 점차 감독과 장로라는 의미가 구별되기 시작하였다.²⁰⁾

초대교회의 클레멘트(Clement of Rome, 30-96)는 감독(장로)과 집사를 교회의 전문적 교역자로 보았고 평신들과 구분했다.²¹⁾ 80-110년 경에 집필된 초대교회 문헌인 디다케(Didache)는 세 부류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언급한다. 그들이 사도들, 예언자들, 교사들이었다. 그리고 이들 외에 교인들이 뽑은 지역의 교회 책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감독들과 봉사자들이었다.²²⁾

속사도 중 하나인 안디옥의 감독 이스나티우스(Ignatius)는 소아시아 교회들에 보낸 7개의 편지에 감독, 장로, 집사의 3중직을 말했다.²³⁾ 히폴리투스(Hippolytus)는 여러 직분에 대해 언급했는데 성직인 감독자, 장로, 봉사자(집사)와 서임에 의한 독서자, 부봉사자, 과부, 동정녀, 증거자, 치유자 등이 그들이다.²⁴⁾ 키프리안(Cyprian)은 사도적 전승으로 감독의 직분을 강조하였다.²⁵⁾

종교개혁시대에 루터(M. Luther)는 주교, 목사, 교사로 구분하였다.²⁶⁾ 츠빙글리(Zwingli)는 설교하는 목사와 감독하는 일을 맡은 장로로 구분하였

다.²⁷⁾ 오이코람파디우스(Johannes Oekolampadius)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목사와 평신도 대표인 장로로 보았다.²⁸⁾ 칼빈의 동역자였던 마틴 부처(Martin Bucer)는 교회의 직분을 목사, 장로, 집사 혹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보았다.²⁹⁾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구약성경부터 종교개혁시대까지는 교회의 직제를 다양하게 보았으나 항존직의 개념으로서 장로(목사, 감독)과 집사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칼빈의 4직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나타난 항존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칼빈의 4직제

종교개혁자이자 장로회 정치를 체계화한 칼빈(Calvin)은 초기 제네바 사역에 실패한 후 스트라스부르(Strassburg)에 망명하게 된다. 그곳에서 마틴 부처(Martin Bucer)를 만나 직분론을 체계화한다. 1541년 칼빈은 교회법에서 교회 직제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교회의 통치를 위해서 제정하신 직분에는 다음 4가지가 있다. 곧 목사들, 그리고 교사들, 다음으로 장로들(다른 말로 하면 영주들에 의해 임명된 대표자들), 마지막으로 집사들이다. 우리가 잘 정돈된 교회를 갖고 그것을 온전히 유지하기 원한다면 마땅히 이 제도형식을 준수해야 한다.³⁰⁾

20)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서울: 이레서원, 2000), 77.

21) J. B. Lightfoot, *The Apostolic Fathers* (Christian Publishing House, 2020), 31.

22) Didache, 「12사도들의 가르침」, 정양모 역(왜관: 분도출판사, 1993), 96.

23) Didache, 「12사도들의 가르침」, 13.

24) Hippolytus, *The Apostolic Tradition of Hippolytus* (Archon Books, 1962), 37.

25) S. L. Greenslade, *Early Latin Theology Selections from Tertullian, Cyprian, Ambrose and Jerome* (Presbyterian Publishing Corporation, 1956), 124-126.

26) Bernhard Lohse, *Martin Luther: An Introduction to His Life and Work* (Fortress Press, 1986), 246.

27) Jaques Courvoisier, *Zwingli: A Reformed Theologian* (Wipf and Stock, 2016), 76.

28) 황대우, 「칼빈과 개혁주의」 (도서출판 갈땀, 2009), 434.

29) Elsie Anne Mckee, *Elders and the Plural Ministry* (Librairie Droz, 1988), 75.

30) 박건택, 「종교개혁사」,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칼빈은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교회의 제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초판(1536)에서 불가견적 교회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2판(1539)에서는 불가견적 교회 이론과 더불어 가견적 교회 이론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개정판(1543)에서 가견적 교회 제도는 교회의 4중 직책(목사, 교사, 장로, 집사)으로 구현되었다. 최종판(1559)에는 1543년판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했다.³¹⁾ 본 장에서는 「기독교강요」 초판, 최종판, 주석과 설교집, 교회법에서 칼빈이 주장한 교회의 4중 직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기독교강요」 초판(1536)

칼빈은 교회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그 사역자의 권위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독교강요」 초판 5장 57절에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목사, 감독, 장로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의 직능을 물려받았다고 말했다. 5장 66절에서는 집사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집사직에 대하여 행 6:3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했다.³²⁾

칼빈이 「기독교강요」 초판에 이렇게 직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그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에 교회의 사역자들의 직무가 무엇인지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과 교황들을 비교하여 설명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각 직분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초판에는 목사와 집사의 직제만 언급하고 장로가 언급되거나 목사와 장로 이중직으로는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칼빈은 1538년 스트라스부르로 떠나기 전 제네바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회의 치리를 위해 3개의 교육지침서를 내놓았다. 그것은 *Genevan Confession(1536)*, *Genevan Catechism(1537)*, *Genevan Articles(1537)*이다.³³⁾ 이들 문서에는 치리, 설교, 교육에 대한 강조가 나타난다. 그러나 교회의 장로 직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1537년에 펴낸 *Genevan Articles*에는 교인들의 생활을 돌보고 관장할 수 있는 자들을 믿는 자들 중에서 세워 임직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언급될 뿐이다.

2) 「기독교강요」 최종판(1559)

칼빈은 3년 후 1541년 스트라스부르에서 돌아와 동역자인 마틴 부처와 함께 장로직제와 같은 구체적 교회직제를 주장했다. 이것은 부처(M. Bucer)가 목사, 장로, 교사, 집사 혹은 목사, 장로, 집사로 주장한 그의 직제의 영향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를 가르쳐온 심창섭 박사는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목사, 교사, 장로, 그리고 집사에 대해 두 사람은 이러한 직제는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이 1537년의 규정(Ordinances)에서 자격있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한 것과 1541년에 거명한 직분자들 사이에 의미심장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문제는 1537년에는 교회의 치리를 위해 제정하려던 직분들의 이

강의안, 2004, 25.

31) 최홍석, 「교회론」, 136.

32)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V.66.

33) 소재열, 「합리적인 당회운영」, 156.

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1541년에는 장로나 기타 직분들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1538년 이전에는 단순히 평신도로 표현된 지도자들이 3년 후에는 성직자들의 멤버로 인정되고 그들의 권위도 신적 기원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³⁴⁾

1541년 11월 제네바에 도착한 칼빈은 교회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한 하나의 치리서를 작성한다. 여기서 그는 4직제를 제시하였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종교개혁사를 교수한 박건택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의 교회관에 영감을 받고 있는 이 교회법은 교회 안에서의 네 가지 직분을 구분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례를 집행하는 임무를 띤 목사의 직분, 건전한 교리로 신자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 치리를 준수하도록 하는 임무를 띤 장로의 직분, 가난한 자를 돕고 병자를 돌볼 책무를 맡고 있는 집사의 직분이다.³⁵⁾

그의 「기독교강요」 최종판은 전체 4권으로 구성되고 제4권은 교회론을 다룬다. 4장은 총 20장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4권 20장 전체가 직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 3-5장까지 직제를 다룬다. 이 부분에서 칼빈은 교회의 4직제(목사, 교사, 장로, 집사)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초판과 확연하게 다른 차이를 보인다.

(1) 목사직과 교사직

34) 심창섭,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원은 무엇인가?” 「신학지남」, 제64권 2집, 66.

35) 박건택, 「종교개혁사」, 52.

칼빈은 「기독교강요」 최종판(1559)에서 먼저 목사와 교사를 다룬다. 그는 엡 4:11³⁶⁾을 통해 이 직분을 설명했다. 초판에서는 특별한 은사를 주어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라고 간단히 말했다. 그러나 최종판에서는 엡 4:11절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칼빈은 제4권 3장의 제목을 ‘교회의 교사와 목회자’(목사)라고 붙였다. 즉 칼빈은 교회의 항존적 직분에 목사와 교사를 두고 있다. 독특한 것은 목사가 먼저 나오지 않고 교사가 먼저 언급된 것이다. 그렇게 칼빈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지배하시고 교회 안에서 권위 또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셔야 한다. 그리고 이 권위는 그의 말씀에 의해서만 행사된다”고 했다.³⁷⁾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봉사를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로 명백하게 선포하신다고 했다.³⁸⁾

목사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하며 훈계하며 권면하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책망하며 성례를 시행하고 장로 또는 대표자들과 함께 우에 있는 징계를 하는 것이다. 칼빈은 목사에 대한 성경의 칭호를 감독과 장로 그리고 목회자라고 명명하였다.³⁹⁾ 칼빈은 목사와 감독, 장로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즉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을 서로 구별하지 않고 감독, 장로, 목사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의 용례를 따르는 것이다.”⁴⁰⁾

36)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엡 4:11)

37)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IV.3.1.

38)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IV.3.1.

39) 소재열, 「합리적인 당회운영」, 157.

40)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IV.3.8.

목사의 소명은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느 누구도 소명이 없이 이 직분을 받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목사의 소명에 대해 3가지를 고려해야 했다. 첫째, 시험이다. 둘째, 목회자들을 세우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그들을 채용함에 있어 어떤 의식과 방법을 간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첫째로 고려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교리와 관계되는 것으로 임직될 자가 성경에 대해 충분하고 건전하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둘째, 그가 성경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을 교화할 수 있고 또 그러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것이다. 또한 교회가 받기로 원하는 이가 혹 어떤 나쁜 견해를 갖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가 교회에서 인정된 교리를 받고 지키기를 선포하게 함이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명을 받은 자가 가르치기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질문해야 하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건택 교수는 이 시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시험은 생활로서 곧 그가 선한 미풍양속을 갖고 있는지 또 책망할 것이 없이 언제나 자신을 다스리는지에 대한 것이다. 마땅히 행해야 할 생활 행동규칙은 사도 바울이 매우 잘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전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단, 분기, 교회 질서에 대한 거역, 민사처벌에 합당한 명백한 신성모독, 성물 매매 및 모든 타락한 선물들, 다른 목회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술책, 합법적인 휴가 및 정당한 불일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교회를 방치하는 것, 허위사실, 거짓 맹세, 음란, 절도, 음주벽, 법적 처벌에 합당한 싸움, 고리대금, 법에 금

지된 스캔들을 일으킬 만한 놀이, 춤과 그 유사한 풍기문란, 국가 비방죄, 다른 이로 하여금 교회를 분리케 하도록 하는 범죄, 성경을 이상하게 다루어 소동을 일으키는 태도, 쓸데없는 문제들을 추구하는 호기심, 어떤 다른 교리를 꺼내놓는다거나 교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교리를 만들어 내는 태도, 성경을 연구하는 일 특히 성경을 읽는 일에 태만한 것, 아침에 가까운 악덕들을 책망하는 일에 대한 게으름, 직분에 요구되는 모든 일에 대한 태만, 천한 익살, 거짓말, 중상모략, 음담패설, 욕설, 경솔함, 나쁜 간책, 인색함과 지나치게 짜짜함(검소함), 상식을 벗어난 분노, 소란과 싸움. 의복이나 몸짓 및 행동에서 목회자에게 합당치 않은 문란함 등이다.⁴¹⁾

칼빈은 목사이자 사도들과 다른 점은 각각 그에게 맡겨진 교회를 다스린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사도들과 똑같은 책임을 맡았다고 보았다.⁴²⁾

목사들은 어떠한가? 바울은 자기만 아니라 그들 전부에 대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고전 4:1)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도 감독은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딤후 1:9)고 한다. 이 구절들과 빈번히 나타나는 비슷한 구절들을 보아서 우리는 목사의 직분에는 복음을 전하며 성례를 집행한다는 두 가지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가르치는 방법은 공개적인 강론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사적으로 가르

41) 박건택, 「종교개혁사」, 27.

42)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IV.3.5.

칠 수도 있다.⁴³⁾

칼빈은 목사와 교사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직책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사들은 제자 훈련이나 성례 집행이나 경고와 권면을 하는 일을 맡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만을 맡았다. 이는 신자들 사이에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목사직은 이 모든 의무를 겸한다.⁴⁴⁾

다시 말해서 교사는 신자들에게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 복음의 순수성이 무지와 잘못된 생각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교회역사가인 필립 샤프(Philip Schaff)는 교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교사들은 고대의 선지자들과 유사성을 지닌다고 말한다. 칼빈 그 자신이 보기 드물게 명석하고 설득력 있는 뛰어난 가르침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신학 교수들은 교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부류에 속한다.⁴⁵⁾

(2) 장로직

칼빈은 교회의 세 번째 직제로 장로를 언급한다. 그가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을 감독, 장로, 목사 또는 사역자라고 부른 것은 성경이 이 말들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경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모두 감독이라고 부른다. 바울은 디도에게 각 도시에 장로들을 임명하라고 했고(딤후 1:5), 명령한 직후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딤후 1:7; 딤후전 3:1). 다른 데는 한 교회에 있는 여러 감독에게 문안하였다(빌 1:1). 사도행전에는 그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이야기한 기록이 있는데 그는 그들을 감독이라고 부른다(행 20:17, 28).⁴⁶⁾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역사신학자 심창섭 교수는 칼빈의 제네바 개혁 운동을 설명하면서 목사는 성경해석과 설교를 담당하는 자이고, 장로는 정치를 담당하고, 집사는 재정을 담당하고, 교사는 신학교수와 시의 종교교육을 담당했다고 하였다.⁴⁷⁾

칼빈은 다스리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영구적인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 직분을 항존적인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다스리는 일이 장로직을 말하고 구제하는 일을 집사직으로 본 것이다.⁴⁸⁾ 그는 장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스리는 사람들은(고전 12:28) 신자들 사이에서 선택된 장로들이었으며 감독들과 함께 도덕적인 견책과 권징을 시행하는 일을 맡았다고 나는 믿는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롬 12:8) 할 것이라는 바울의 말을 달리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각 교회에는 경건하고 근엄하고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장로회가 있어서 과오를 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에 말하겠다. 그런데 이 직분이 한 시대만 국한된 것이 아님은 경험상 분명하

43)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IV.3.6.

44)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IV.3.4.

45)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ume VIII: Modern Christianity. The Swiss Reformation*, 411.

46)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IV.3.8.

47) 심창섭, 박상봉, 「교회사」, 380.

48)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IV.3.8.

다. 그러므로 이 다스리는 직분은 모든 시대에 필요하다.⁴⁹⁾

칼빈의 제네바에서 장로는 영주가 감독회에 파견한 위임된 자들 또는 대표자들이라 불렀다. 다시 말해서 장로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한다. 장로의 직무는 각자의 생활을 감시하고 넘어지는 자들과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보고 친절하게 훈계하는 일이었다. 또 필요한 경우 형제애를 가지고 징계를 위한 대표자들의 모임에 보고하여 다른 이들과 공통으로 행하는 것이다.

로버트 킹던(Robert M. Kingdon)은 칼빈의 제네바시의 장로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의회(The Little Council)에서 2명, 60인 의회(The Council of Sixty)로부터 4명, 200인 의회(The Two Hundred Council)에서 6명을 뽑게 된다. 자격은 ① 선하고 정직해야 한다. ②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③ 아무런 혐의가 없어야 한다. ④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⑤ 영적으로도 매우 사려 깊은 이들이어야 한다. 이들은 각 도시의 지역을 효과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며 모든 지역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소의회가 적당한 후보를 선출하여 200인 의회에 제출하면 200인 의회는 이를 검토하고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그들을 불러 서약을 하게 하고 업무에 들어가게 한다. 이들의 주 업무는 제네바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잘 살피고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형제처럼 권면하고 목사회(The Company of Geneva Pastors)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 함께 형제애훈련 혹은 권징을 실행한

다. 목사들은 컨시스토리의 일이 목사의 일로 간주되어 무보수로 일한 데 반해 장로들은 컨시토리 회의에 참석한 만큼 연말에 사례를 받았다.⁵⁰⁾

(3) 집사직

칼빈은 계속해서 「기독교강요」 최종판에서 집사에 대해 언급한다.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로마서에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공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고(롬 12:8) 두 가지 종류에 관해 언급하였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공적인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집사직에는 두 가지 다른 등급이 있었을 것이다. 만일 내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 바울은 처음 문장에서 구제 물자를 나누어 주는 집사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둘째 문장은 빈민과 병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말한다.⁵¹⁾

디아코니아(*διακονια*, ‘섬기는 일, 집사직’)라는 말에는 더 넓은 뜻이 있지만, 성경에서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구제 물자를 분배하며, 빈민을 돌보고, 빈민 구제금을 관리하는 일을 맡긴 사람들이다. 그들의 기원과 임명과 직분에 대해서는 누가 사도행전에 기록했다(행 6:3).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은 매일 구제에서 제외된다는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기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공궤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직한 사람 일곱 명을 선택해서 이 일을 맡기라고 신자들에게 부탁한 것이다(행 6:1

50) Robert M. Kingdon, *Adultery and Divorce in Calvin's Geneva*, 188.

51)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IV.3.9.

49)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IV.3.8.

이하). 그러므로 사도들의 교회에는 이런 종류의 집사들이 있었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⁵²⁾

3) 주석과 설교집에 나타난 칼빈의 직제

(1) 목사직

칼빈은 목사를 감독이나 장로로 혹은 사역자라고 교대로 불렀다. 그리고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보았다.⁵³⁾ 그는 딤후 1:9의 주석에서 목사는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에 능통해야 하며, 말씀의 진리를 꾸준히 수호해야 하며, 학식과 가르침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⁵⁴⁾

뿐만 아니라 엡 4:11 주석에서는 다양하게 목사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목사는 양 무리를 돌보는 사람이며, 둘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며, 셋째, 목사는 교사와 구별된 직책이며, 단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는 다른 영구적이며, 넷째, 교회는 대감독이라는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위에 계신 분이며, 목사들은 그리스도께 예속되어 있으며 목사들은 서로서로 동료라고 하였다.⁵⁵⁾

또 칼빈은 에베소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목사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료 바

나바가 모든 곳에서 목사들을 임명해 세웠다는 것과(행 14:23), 또한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교회들로 파송함으로써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곳에는 무질서만 남아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각 교회들이 언제나 자기들을 이끌어 줄 목사를 얻도록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딤후 5:22; 딤후 1:5).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진 목사들에 대한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행해졌다는 사실과, 또한 그 선택된 자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지역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이곳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는 장소가 위협에 처했을 때 누벽이나 탑에 올라가 자리를 지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으로 달려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가 있는 장소에 자신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바로 이것이 바울이 그와 같은 다양한 임무들에 관해 말할 때, 우리가 그 말로부터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⁵⁶⁾

이 설교에 나타난 내용으로 그가 가진 목사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임명된 사람들이다. 둘째, 질서를 잡기 위해 파송된 사람들이다. 셋째, 임지를 옮기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을 묶어 두고 평생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목사는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 지식을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지식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⁵⁷⁾

칼빈은 성령과 목사를 연결하여 설명한다. 에베

52)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IV.3.9.

53) 홍현준, “칼빈의 직제연구,” 총신대 일반대학원 Th.M. 학위논문, 61.

54) Calvin, *New Testament Commentaries*, Titus, 1:19.

55) Calvin, *New Testament Commentaries*, Ephesians, 4:11.

56) 칼빈, 「에베소서 설교 하」, 18.

57) 칼빈, 「에베소서 설교 하」, 21.

소서 설교에서 칼빈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 목사라고 소개한다. 즉 목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⁵⁸⁾ 칼빈은 목사가 교사적 기능과 목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⁵⁹⁾

(2) 교사직

교사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엡 4:11과 고전 12:28에 나온다. 칼빈은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구별된 것으로 보았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두 직분이 같은 것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사상은 16세기까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칼빈은 이 두 직분을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⁶⁰⁾ 마틴 부처는 1527년 「에베소서 주석」에서 목사와 교사를 구별하였다. 부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많은 목사들이 또한 선지자들이었고 복음전도자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교회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은사를 부여 받았지만 또한 능숙하게 설교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아니었다. 교사들은 가르치는 것과 지도하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후자들이 확실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에 의해 배우기 때문이다. 그들은 복음전도자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사들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거룩한 방식으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공공연하게 설교하고 전하는 능력을 부여받지 못할지도 모른다.⁶¹⁾

칼빈도 부처의 영향으로 목사와 교사를 구분했다. 칼빈은 목사와 교사를 사도나 선지자, 복음전하는 자와 달리 영구적인 직제로 보았다. 에베소서 주석에서 엡 4:11을 주석하며 교사는 간단히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해석했다.⁶²⁾ 또 고전 12:28의 주석에서는 종교의 순수성이 교회에서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 건전한 교리를 지키고 전파하는 직제라고 했다.⁶³⁾

칼빈은 엡 4:11에 대한 설교집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성경에 대한 건전하고 바른 이해가 있도록 하고 또한 그런 이해가 힘을 얻으며 교회 안에서 지속되어 나가게 함으로써 이단과 그릇된 의견들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고 믿는 자들이 모든 것들 위에 굳건하고 확실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해설하는 것이다.⁶⁴⁾

칼빈은 교사는 모든 분파와 잘못된 것들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교사의 직무를 제시한 것이다.

(3) 장로직

칼빈은 1537년 첫 번째 제네바 목회 시절에 시의회에 교회조직의 기초 규칙을 제출하였다. 칼빈은 거기서 평신도 장로의 제도의 필요성을 논하고, 1541년 두 번째 제네바 목회 시절에 시의회에 다시 「교회법」(*The Ecclesiastical Ordinances*)을 제출한다. 여기에서 칼빈은 장로직에 대해 논

58) 칼빈, 「에베소서 설교 하」, 11.

59) 안인섭, 「칼빈과 어거스틴」, 244.

60) 크리소스톰과 제롬, 어거스틴은 목사와 교사를 같은 직분으로 이해했다.

61) Elsie Anne Mckee, *Elders and the Plural Ministry*, 147.

62) Calvin, *New Testament Commentaries*, Ephesians, 4:11.

63) Calvin, *New Testament Commentaries*, 1 Corinthians, 12:28.

64) J. Calvin, 「에베소서 설교 하」, 17.

했다. 칼빈은 장로직제에 대해 성경의 근거를 네 곳에서 찾았다.

첫째, 롬 12:8의 주석에서 사람들을 보존하고 안전을 밤낮으로 경계하고 무엇보다 근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⁶⁵⁾

둘째, 고전 12:28의 주석에서 장로는 진실성이나 경험, 권위에서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다스리는 직책을 장로들이라고 말한 것은 초대교회에 장로회라는 전통을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⁶⁶⁾

셋째, 딤후 5:17의 주석에서 장로직에는 진지하고 잘 단련된 자들이 선출되어야 하고 공동의회를 통해 목사들과 함께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규율과 기강을 잡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칼빈은 여기서 목사와 장로의 이중 장로직을 언급했다.⁶⁷⁾

넷째, 딤후 1:5의 주석에서 교사적인 장로 즉 가르치는 장로인 감독이나 목사의 역할의 장로로 주석하고 있다.⁶⁸⁾

(4) 집사직

칼빈은 집사직에 대하여도 중요하게 여겼다. 로마 가톨릭교는 집사직을 목사직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칼빈은 행 6:1-6을 통해서 로마교가 집사직을 사제의 조력자로, 봉사하는 직분으로 말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집사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제도적 임무를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이 임무가 교

회의 질서로서 집사제도를 통해 충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⁶⁹⁾

칼빈은 로마교에 반대하여 집사는 교회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룩한 목적을 가진 직무이고 불쌍한 자들을 구호하는 일을 수호해야 직무로 이해했다.⁷⁰⁾ 집사들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고 병원을 관리한다. 이들은 건전한 질서에 역행하는 걸식을 예방해야 했다.⁷¹⁾ 이러한 칼빈의 집사직에 대한 이해는 제네바의 교회법령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또 칼빈은 집사를 교회의 재산의 운용으로 위해 감독의 위임을 받은 필수적 직분으로 이해했다. 칼빈은 집사직이 장로와 사역의 파트너로 교회에 있어 중요한 직분임을 강조하였다.⁷²⁾

행정관리가 서로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르치는 일을 충분히 전담할 수 없을 정도로 휘말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다른 일을 거절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들이 가난한 일들에 대한 관심을 전적으로 단념한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된다.⁷³⁾

칼빈은 집사의 직무가 교회에서 사도들의 분주함으로 만들어진 행정적 차원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 사도들은 복음 선포 사역이 너무나 소중했

69) Elsie Anne Mckee, *Elders and the Plural Ministry*, 168.

70) Robert M. Kingdon, *Adultery and Divorce in Calvin's Geneva*, 137.

71)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ume VIII: Modern Christianity. The Swiss Reformation*, 412.

72) 홍현준, "칼빈의 직제연구," 68.

73) Calvin, *New Testament Commentaries*, Acts, 172.

65) Calvin, *New Testament Commentaries*, Romans, 12:8.

66) Calvin, *New Testament Commentaries*, 1 Corinthians, 12:28.

67) Calvin, *New Testament Commentaries*, 1 Timothy, 12:28.

68) Calvin, *New Testament Commentaries*, Titus, 1:5.

으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 따라서 더 나은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구제하는 사람을 따로 두기로 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 집사직을 교회를 위해 처음부터 생각하고 계신 것이었다. 칼빈은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가난한 자를 돕는 집사직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⁷⁴⁾

칼빈은 롬 12:8을 근거로 하여 가난한 자들의 구호를 위해 기금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행정직을 맡은 집사직과 가난한 자들에게 직접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사업가의 집사직을 두어 두 종류의 집사직이 존재한다고 했다.⁷⁵⁾ 구제하는 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주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공적 재물 분배 책임을 맡은 자들을 집사(διακονος)로 지칭하였다. 또 자비를 보여주는 자들을 말하면서 그것은 고대교회 풍속에 따라 병자 간호 책임을 맡은 과부들과 다른 봉사자들을 뜻한다고 했다. 사도행전 6:3 주석에서 양심적 자신감이 없이는 아무도 교회에서의 신성한 기능을 맡도록 선택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즉 성실하고 지혜와 성령의 은사로 갖추어진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이 직분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⁷⁶⁾

4) 교회법에 나타난 칼빈의 직제

교회역사가인 박건택 교수는 다음과 같이 교회법에 나타난 칼빈의 직제를 언급한다.

74) 홍현준, “칼빈의 직제연구,” 69.

75) 필립 샤프는 칼빈의 집사직에 대해 두 가지로 제시한다. “집사는 두 부류로 나뉘는데 구제금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다.”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ume VIII: Modern Christianity. The Swiss Reformation*, 412.

76) Calvin, *New Testament Commentaries*, Acts, 174.

칼뱅은 새 교회 제도를 위해 보다 민주화된 형태를 성경에서 끌어왔다(롬 12장; 고전 12장; 엡 4장). 이것이 곧 교회의 4중 사역 개념으로 지금까지 개혁파(장로교) 교회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541년 교회법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교회 사역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칼뱅이 세운 새 교회는 새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하는 새 질서를 갖는다.⁷⁷⁾

칼빈은 교회법령에서 4가지 직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선 우리 주님께서 그의 교회 통치를 위해 제정하신 직분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곧 목사, 그리고 교사, 다음으로 장로 ... 마지막으로 집사이다. 우리가 잘 정돈된 교회를 갖고 또 그것을 온전히 유지하기 원한다면 마땅히 이 제도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⁷⁸⁾

칼빈의 이 4직제는 그가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마틴 부처의 영향이라고 본다. 칼빈이 처음에 제네바에 도착하여 「제네바 교회 조직과 예배에 관한 조항들」(Articles concernant l'organisation de l'Eglise et du culte à Genève, proposés au conseil par les ministres)을 작성할 당시만 해도 네 가지 직분론이 나타나지 않았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당하고 스트라스부르에 머물던 동안 부처의 영향을 받아 그의 사고 속에 네 가지 직분론이 자리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 가노치(Alexandre Ganoczy)에 의하면 칼빈이 주장한 4직제의 근원은 마틴 부처에 근거한다고 했다.⁷⁹⁾

77) 박건택, 「개신교 역사와 신학」, 93.

78) 칼빈, “교회법령,” 「칼뱅소품집 1」, 593.

칼빈은 엡 4:11절의 직분에 대한 말씀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언급하고 이 직분들에서 비상직과 향존직을 구분했다. 이 5개 직분 중 목사와 교사만이 교회의 향존직으로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직분이며, 처음 세 가지 직분 즉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은 비상직으로 주님께서 그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세운 직분으로 조직된 교회가 생길 때까지만 존재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임시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역할은 교회 안에 영구적인 것들로 정해지지 않고 다만 교회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교회를 모세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옮겨 놓아야 하는 그 기간 동안만을 위해 정해졌다는 것이다....그러나 나는 이 직책을 임시직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 교회 안에는 그것의 적절한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⁸⁰⁾

칼빈은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은 사도들의 직분과 하나로 묶어지고 사도들의 직분은 말씀 선포와 성례전 시행으로 요약된다. 이 직분은 오늘날 목사직으로 대체된다. 선지자의 직분은 교사를 통해 대체가 된다. 교사는 권징이나 경고, 권면과 성례를 집행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다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만 책임을 진다. 신자들 중 교리를 온전하고 순수하게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진 것이 교사이다. 목사직에는 이 모든 역할이 포함된다. 다스리는 일과 구제하는 일만을 항구적 사역으로 여겼다. 다스리는 일은 도덕적인 문제를 판결하고

권징을 시행하는 것으로 장로가 맡은 사역이고 구제하는 일 즉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집사가 맡은 사역이다. 칼빈은 이처럼 신약성경 안에 나타난 여러 사역을 임시직과 향존직으로 구별하고 향존직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칼빈은 이렇게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4직제를 설립하고 주장했다.

(1) 목사직

칼빈은 「교회법령」에서 목사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때로 감독과 장로 그리고 목회자로 명명하는데, 이들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교육하고, 훈계하며, 권면하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책망하며, 성례를 시행하고 장로 또는 정부 대표들과 함께 우에 있는 징계를 하는 것이다.⁸¹⁾

목사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성례를 집행하는 일, 장로와 함께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다. 이런 목사의 자격을 위해 두 가지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그 첫째 시험은 목사후보자의 교리 즉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건전한 지식, 교리의 전달 능력에 대한 시험이다. 둘째 시험은 목사 후보자의 생활 즉 그가 책망할 것이 없이 자신을 잘 다스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즉 윤리에 대한 시험이다.

목사 임직의 순서는 목회자 직분을 받을 자를 택하고 정부에 알리며 시의회에 출두하여 시의회는 타당한 여부를 조사한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면 교인들에게 설교를 시킨다. 신도회의 다수의

79) Alexandre Ganoczy, *Calvin, théologien de l'Église et du ministère*, 298.

80)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IV.3.4.

81) 칼빈, “교회법령,” 593.

동의를 얻어 최종결정한다. 목사의 임명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시의회와 교회가 상호협력적 관계에서 신중하게 목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목사 에 대한 선택은 현대의 노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신도회는 현대의 개교회 공동체회의의 역할이다.⁸²⁾

(2) 교사직 또는 박사직

칼빈은 마틴 부처의 영향 아래에서 엡 4:11절에 나오는 교사를 교회의 직제 중 하나로 보았다. 부처는 교회의 직제 중 교사를 가장 앞에 두었다.⁸³⁾ 칼빈은 교사직을 초대교회의 선지자직과 차이는 나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순수하고 건전한 교리를 해석하고 보존, 전달하는 직분으로 보았다. 선지자는 비상한 은사의 능력으로 초대교회의 설립을 위해 주어진 임시직이었다. 그러나 교사는 교회의 계속적 발전 속에서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목사와 사도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교사와 선지자 사이에도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다.⁸⁴⁾

칼빈은 엡 4:11절을 주석하며 목사와 교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속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두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강조한 것이다. 교사의 직무에 대해 “교회법령”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교사들의 고유한 직무는 신도들을 건전한 교리로 가르쳐서 복음의 순수함이 무지나 잘못된 견해로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 칭호를 하나님의 교리를

보존하기 위한 도구요, 또 목사들과 사역자들의 부족으로 교회가 황폐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들로 이해한다. 이처럼 보다 감지하기 쉬운 말을 사용하자면 우리는 이 칭호를 학교 교육 직분 (ordre des écoles)이라고 부를 것이다.⁸⁵⁾

칼빈은 계속해서 목사와 교사의 차이를 언급한다.

계속해서 목사와 교사가 뒤따르는데, 교회는 이들 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없다. 나는 이 두 직분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교사들은 권징을 하거나 성례를 집행하거나 경고하거나 권면해야 할 과제를 가지지 않고, 다만 교회 안에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과제를 갖는다. 그러나 목사의 과제는 이 모든 일이 해당된다.⁸⁶⁾

목사는 지역교회에서 설교하고 성례, 권징을 행하였다. 이것이 목사의 직무였다. 반면에 교사는 말씀을 해석하고 교육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았다. 즉 목사는 목회사역의 전반적인 일을 맡고, 교사는 목회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한 영역 즉 말씀 교육을 전문적으로 맡았다. 교사는 목사와 달리 권징을 하거나 성례를 집행하거나 성도에게 경고나 권면을 하지 않고 단지 성경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책임을 맡았다. 교리를 순수하게 보존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신학수업을 시키는 사역을 한다.

(3) 장로직

82) 칼빈, “교회법령,” 594.

83) Jaque Couvoisier, *La notion d'Église chez Bucer dans son développement historique*, 88.

84) Ganoczy, *Calvin, théologien de l'Église et du ministère*, 367.

85) 칼빈, “교회법령,” 597.

86)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IV.3.4.

장로직은 신자의 행동에 대하여 감독을 한다. 신자들이 바르게 사는지 넘어지는지, 무질서한 삶을 사는지 관찰하고 사랑으로 훈계한다. 따라서 이런 장로직은 먼저 바로 서야 하고, 정직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아무 혐의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으로 매우 사려 깊어야 한다.⁸⁷⁾

칼빈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치리회(consistoire)를 설립한다. 구성원은 12명의 장로와 12명의 목사, 한 명의 소환관과 한 명의 서기이다. 장로는 소의회에서 2명, 60인회에서 4명, 200인회에서 6명, 총 12명을 선출한다.⁸⁸⁾

(4) 집사직

칼빈은 집사들이 중세 시대에 예배의식에서 사제를 돕고 그들의 역할을 낮은 것으로 변질시켰다고 했다. 행 6장의 성경적 전통과 달리 당시 로마교의 집사직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디아코니아적 책임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 칼빈은 이런 집사직의 역할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⁸⁹⁾

칼빈은 집사직을 성경대로 회복하려 했다. 그래서 집사직을 교회의 고유한 사역으로 간주하였다. 초대교회부터 집사는 존재하던 직분이었다. 칼빈은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집사와 병든 자를 돌보는 두 가지 종류의 집사를 언급했다.

고대교회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집사들이 있었다. 한 부류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산, 즉 매일 매일의 구호금뿐만 아니라, 재산, 대출 그리고 생활 보조금을 수납하고, 분배하며, 보관하는 일을 위

임받았다. 다른 한 부류는 병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며 가난한 자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일로서 이런 관습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중에 있다.⁹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집사를 프로큐레르(procureur)라 부르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집사를 오스피탈리에(hospitalier)라 불렀다. 전자는 기독교 사회봉사자와 같은 것이다. 돈을 모아 분배하고 행정적인 일을 처리했다. 이 사역은 시정부와 연결되어 진행되었다. 후자는 고아원, 양로원, 병원을 경영하는 책임자로서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역을 진행했다. 칼빈에게 집사는 이들을 다 포괄하는 교회의 직분이었다. 집사는 경제와 사회복지 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영적 연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경제적 재화가 교회의 모든 지체 가운데 그리고 교회를 넘어 골고루 흐르도록 재확립할 책임을 가진다. 바로 이 점에서 집사직은 목사직과 엄격히 구별되고 목사가 시행할 수 없는 독립적 역할을 수행한다.⁹¹⁾

칼빈은 집사직을 목사직 아래 두지 않고 집사직의 고유성, 특수성을 확보하려 했다. “교회법령”에는 나오지 않지만 집사직은 장로 선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임기는 1년으로 볼 수 있다. 칼빈은 이렇게 복음의 교리를 보존하는 목사직, 교회를 유지하는 장로직,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교사직,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병원과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하는 집사직으로 직분을 구분하였다. 이것은 또한 목사와 목사회, 장로와 치리회(당회), 교사와 아카데미, 집사와 구빈원으로 연결해

87) 칼빈, “교회법령,” 597-598.

88) 칼빈, “교회법령,” 598.

89) Ermanno Genre, *Le culte chrétien: une perspective protestante*, 180-181.

90) 칼빈, “교회법령,” 598.

91) G. Hammann, *L'amour retrouvé. La diaconie chrétienne et le ministère du diacre*, 242.

서 이해했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나타난 항존직

1) 칼빈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직제 차이점

칼빈은 교회의 직제를 4가지로 제시하였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가 그것이다. 그런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목사(장로), 집사 두 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교수했던 김길성 박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성경은 비상직원 외에 통상직원을 말씀하고 있다. 통상직원은 크게 1)항존직 2)임시직 3)준직원으로 나뉜다. 엡 4:11에는 교회의 비상직원 외에 통상직원으로 목사와 교사를 말하고 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초기판에 목사와 교사를 구별하였으나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최종판(1559)에는 목사, 장로, 집사를 구별하고, 교사의 직분이 목사에게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롬 12:7-8과 고전 12:28에서 ‘다스리는 자’와 ‘공물을 베푸는 자’ 두 직원, 곧 장로와 집사를 취하여 통상직원의 반열에 추가했다. 그리고 그는 감독, 장로, 목사는 본래 같은 직분의 다른 이름으로 보았다.⁹²⁾

엡 4:11의 주석을 보면 칼빈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직분을 제시한다. 그런데 「기독교강요」 최종판에는 목사(교사), 장로, 집사로 제시하고 있다. 장로회 헌법에는 정치편 3장 1조에 교회의 창설직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제 1 조 교회 창설(創設)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로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마 10:8)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選拔)하시(시 2:8; 계 7:9) 한 몸(고전 10:17)이 되게 하셨다.⁹³⁾

계속해서 2조는 항존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제 2 조 교회의 항존직(恒存職)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행 20:17, 28; 딤후 3:7)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3. 항존직의 시무년한은 만 70세로 한다.⁹⁴⁾

교회의 항존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직분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것이다.⁹⁵⁾ 헌법 정치 3장 2조는 항존직에 대해 장로(감독), 집사로 제시한다. 그리고 장로에는 두 반이 있으며 강도와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만 하는 장로로 구분한다.

J. A. 하지는 “55문. 교회에 항상 존재할 통상직원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교회에 항상 존재할 통상직원은 셋이니 목사와 장로와 집사이다.”라고 했다.⁹⁶⁾ 그리고 이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

9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3장 1조. http://gapck.org/sub_06/sub05_04.asp

9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3장 2조.

95) 김길성, 「개혁주의 교회론」, 29.

96) J. A. 하지, 「교회정치 문답조례」, 2장, 40-41.

92) 김길성, 「개혁주의 교회론」, 29.

가 항상 존재할 통상직원이 될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항상 존재할 통상직원이 될 이유는 저희가 행할 전도와 다스림과 구제하는 일은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항존 직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에 이 세 가지 직분의 책임과 자격과 선정방법을 자세히 가르친 것도 이 세 직분이 통상직원이 되어야 할 것을 실증한다.⁹⁷⁾

소재열 박사는 항존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항존직원이란 항상 있는 통상적인 직원을 말한다. 교회가 세워진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역은 말씀선포와 전도, 다스리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다. 이같은 사역을 위해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항존직 즉 항상 통상적으로 있어야 하는 직원이라는 말이다. 항존직은 목사와 장로로, 집사라고 한다면 이 세 직분은 필히 안수를 통해서 임직한다. 따라서 항존직이란 안수를 통해 임직한 직분을 항존직이라 할 수 있다.⁹⁸⁾

항존직과 임시직의 뚜렷한 구분은 안수의 여부를 통해 구분이 가능하다. 안수를 하는 직분은 항존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직분이다. 그러나 안수를 하지 않는 직분은 임시직으로 이해하면 구분하기 쉽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항존직

(1) 목사직(교사직)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는 목사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제 1 조 목사의 의의(意義)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任職)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롬 11:13). 성경에 이 직분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 그 칭호로 모든 책임을 나타낸다.

1. 양의 무리를 감사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하며(렘 3:15; 벰전 5:2~4; 담전 3:1),
2.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하며 또 신약의 **집사**라 하며(벧 1:1; 고전 4:1; 고후 3:6),
3. 엄숙하고 지혜롭게 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근실히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하며(벰전 5:1~3),
4.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하며(계 2:1),
5.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 하며(고후 5:20; 엠 6:20),
6.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각성(覺醒)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하며(딤후 1:9; 담전 2:7; 담후 1:11),
7. 죄로 침륜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하며(담후 4:5),
8.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율례(律例)를 시행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칭지기**라 한다(눅 12:42; 고전 4:1~2). 이는 계급을 가리켜 칭함이 아니요, 다만 각양 책임을 가리켜 칭하는 것뿐이다.⁹⁹⁾

97) J. A. 하지, 「교회정치 문답조례」, 2장, 41.

98) 소재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 219.

99)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4장 1조.

다음으로 목사의 자격은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제 2 조 목사의 자격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善良)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가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外人)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연령은 만29세 이상자로 한다. 단, 군목과 선교사는 만27세 이상자로 한다(답전 3:1~7).¹⁰⁰⁾

또한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 3 조 목사의 직무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 되는 자에게 각각 다른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 재능대로 목사나 교사나 그밖에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엡 4:11).

1.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는 양무리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협력(合力)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2. 목사가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는 목자같이 돌아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3. 선교사로 외국에 선교할 때에는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

4. 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를

시무하는 경우에는 교회에 덕의(德義)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도록 힘써야 한다.

5. 기독교 교육 지도자로 목사나 노회가 지교회나 교회에 관계되는 기독교 교육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

6. 강도사가 위에 2, 4, 5항의 직무를 당할 때 노회의 고시를 받고 지교회 목사가 될 자격까지 충분한 줄로 인정하면서 목사로 임직할 수 있다.

7.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¹⁰¹⁾

자세히 보면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하나로 보는 것이다. 목사는 교사와 함께 엡 4:11에 발견된다. 사도시대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따로 교사가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사도시대 후 점차 교훈이 장로직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답전 5:17). 그래서 교회 안에는 치리만을 맡은 장로와 치리와 교훈을 겸하는 장로의 직분이 구별된 듯하다. 지금 목사들은 장로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일 외에 말씀과 성례의 사역을 집행하며 교회의 정치에 필요한 규정들을 짓는다.¹⁰²⁾

목사는 3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소재열 박사는 목사의 3가지 권한을 첫째, 교리권, 둘째, 치리권, 셋째, 사역권으로 제시한다.¹⁰³⁾

첫째, 교리권은 교훈권이라고 부른다. 정치 5장 2조에서 장로는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권은 교리권을 말한다. 치리회에서는 언제나 목사와 장로는 같은 권한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말

10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4장 3조.

102) 김길성, 「개혁주의 교회론」, 29.

103) 소재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 224-225.

100)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4장 2조.

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시행하고, 신앙고백을 작성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한다.¹⁰⁴⁾

둘째, 치리권은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권한이다. 질서유지권과 순결유지권이 있다.

셋째, 사역권(봉사권)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신 것과 같이 그의 제자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다. 영적 사역권과 물질적 사역권(구제)을 갖는다.¹⁰⁵⁾

목사는 교회의 향존직으로 가르치는 장로를 가리킨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전을 집행하는 직임을 수행한다. 또 교회의 교육과 복음전도의 책임도 진다. 더욱이 교회 전체의 신령한 성장을 책임진다.¹⁰⁶⁾

(2) 장로직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장로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제 1 조 장로직의 기원

율법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 장로이다.

제 2 조 장로의 권한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교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딤후 5:17; 롬 12:7~8).¹⁰⁷⁾

헌법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04) 소재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 224.

105) 소재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 225.

106) 서철원, 「교의신학 교회론」, 133.

107)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5장 1-2조.

제 4 조 장로의 직무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한다.

치리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한다.

2. 도리 오해(道理誤解)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 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3. 교우를 심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遭喪者)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身分)상 의무와 직무(職務)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5.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 받아야 할 자가 있는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¹⁰⁸⁾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교수했던 서철원 박사는 이 치리하는 장로를 권면하는 장로로 표시한다.¹⁰⁹⁾ 장로는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가 그대로 사는지 확인해야 한다.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는 직임이 장로의 직임이다. 그리고 장로는 권징을 시행한다. 장로는 목사와 함께 권징위원들이 되어 죄의 정도에

108)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5장 4조.

109) 서철원, 「교의신학 교회론」, 136.

따라 권고, 수찬정지, 출교 등을 판정한다. 또한 심방하여 성도의 교제를 계속하도록 하고, 예배위원으로 활동한다. 110)

총신대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였던 김길성 박사는 교회의 장로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신약성경에서 장로 혹은 감독은 같은 직분의 다른 이름이다(행 20:17, 28; 딤후전 3:1, 4:14; 5:17-19; 딤후전 1:5, 7; 벧전 5:1-2). 장로는 연장자를 의미하고 감독은 감시자를 가리킨다. 장로 직에는 다른 이름들이 사용되기도 했으니 치리자, 다스리는 자, 인도자, 목사, 등의 명칭이 적용된다. 장로의 임기는 종신직이며 목사와 더불어 치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분이다. 111)

교회법 전문가인 소재열 박사는 장로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장로는 2명 이상의 복수의 장로가 존재하므로 교인의 대표자가 여럿이다. 장로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12)

장로는 독단적으로 교회의 행정을 처리하지 못한다. 또 치리를 하는 경우도 장로 독단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장로의 독주를 막는 장치로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를 복수로 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장로의 독주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장로교 조직신학자 로버트 레이몬드(Robert L.

Reymond)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 바울의 주장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딤후전 3:2, 7; 딤후전 1:6).
- ② 장로는 한 아내만의 남편이어야 한다(딤후전 3:2; 딤후전 1:6).
- ③ 장로는 절제하며, 근신하며, 존경할 만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온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선한 것을 사랑하며, 훈련된 사람이어야 한다(딤후전 3:2; 딤후전 1:8).
- ④ 장로는 술을 즐기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다툼을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딤후전 3:3; 딤후전 1:7).
- ⑤ 장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딤후전 3:4; 딤후전 1:6).
- ⑥ 장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딤후전 3:5; 딤후전 1:7).
- ⑦ 장로는 새로 입교한(즉 최근에 회심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딤후전 3:6).
- ⑧ 장로는 배운 바 신뢰할 만한 가르침을 굳게 지켜야 한다(딤후전 1:9).
- ⑨ 장로는 가르치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이러한 가르침에 반대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딤후전 3:2; 딤후전 1:9). 113)

(3) 집사직

장로회 헌법 정치 6장에는 집사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다.

110) 서철원, 「교의신학 교회론」, 137.

111) 김길성, 「개혁주의 교회론」, 30.

112) 소재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 225.

113) 로버트 L. 레이몬드, 「최신조직신학」, 1136.

제 1 조 집사직(職)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按手)임직을 받는 교회 향존(恒存)직이다.

제 2 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尊崇)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本分)인즉 집사 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답전 3:8~13).¹¹⁴⁾

또한 3조에서는 집사의 직무를 제시한다.

제 3 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협력(合力)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급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收納支出) 한다(행 6:1~3).¹¹⁵⁾

서철원 박사는 집사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집사는 구제와 교회의 재정관리를 위해 세워졌다(행 6:1-6). 예루살렘교회에서 처음으로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집사들이 선출되고 사도들에 의해서 안수해서 세워졌다. 그래서 집사직도 교회의 향존직분이 되었다.¹¹⁶⁾

집사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구제와 재정 관

리를 정직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집사는 집에서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회 밖에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 교회의 재정 관리의 책무와 구제의 책무등이 있다.¹¹⁷⁾ 소재열 박사는 집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교회 향존직으로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가 있다. 이 집사는 시무집사를 의미한다. 성경은 집사를 교회 안에서 구별된 직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그의 직무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모금한 현금을 나누는 일이다. 이에 덧붙여 그들은 교회의 세상일을 관리하도록 합법적으로 되어 있다(정문 제113문).¹¹⁸⁾

J. A. 하지는 집사직에 대해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향존직이다.”라고 했다.¹¹⁹⁾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교회의 향존직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행할 전도와 다스림과 구제하는 일은 교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는 직무이기 때문이다. 또 성경은 이 세 가지 직분의 책임과 자격과 선정방법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다.¹²⁰⁾

또한 「교회정치 문답조례」 제103문은 집사에 대한 정의를 “집사란 성경이 보여주는대로 교회 안의 특수 직원이니 그 직무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돌아보며 저희를 구제하며 교회 살림을 담당

117) 서철원, 「교의신학 교회론」, 139.

118) 소재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 227.

119) J. A. 하지, 「교회정치 문답조례」, 64.

120) 소재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 227; J. A. 하지, 「교회정치 문답조례」, 3장, 56문.

11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6장 1-2조.

11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6장 3조.

116) 서철원, 「교의신학 교회론」, 138.

한다.”고 밝힌다.¹²¹⁾

김길성 박사는 “신약에서 집사는 디아코니아로 표현되었다(행 6:1-6, 11:29; 롬 12:7; 고후 8:4, 9:1, 12-13; 계 2:19). 이 직위에 필요한 자격은 딤편 3:8-12에 나타난다. 집사는 구제와 재정관리를 담당했다(행 6:1-6; 빌 1:1; 딤편 3:8-15). 장로와 더불어 장립집사의 임기는 종신직이다.”라고 했다.¹²²⁾ 또한 J. A. 하지는 집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집사의 직무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급한 구제비와 일반재정을 수납 지출한다(행 6:1-3).¹²³⁾

「교회정치 문답조례」 107문은 집사의 직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07문. 집사의 직무가 무엇인가?

답. 집사란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돌보며, 저희를 구제하며, 교회 살림을 담당하는 자이니 아래와 같은 직무가 있다.

- ①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심방하여 저희의 참 소원을 알며,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며 위로한다.
- ② 직원들은 구제와 신령한 위로 및 기도로 항상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과 결합된 일,
- ③ 구제비를 수합하며 지출하는 일,
- ④ 성찬에 쓰는 기명과 그 용품을 예비하는 일,
- ⑤ 부동산 및 상납 관계 용비 외의 모든 교회 재정을 관장하는 일.¹²⁴⁾

집사의 직무는 홀로 구제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와 반드시 협력하여 빈곤한 자를 권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 고아,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한다. 또 당회의 감독 아래에서 행한다. 개인이 하거나 집사회라는 집단이 결정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또 교회에서 수급한 구제비와 일반재정을 수납하고 지출한다. 모두 당회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로버트 레이몬드 박사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① 집사들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신실해야 한다. 문자적으로 말해서 “일구이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3:8).
- ② 집사들은 술에 탐닉해서는 안 된다(3:8).
- ③ 집사들은 더러운 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3:9).
- ④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3:12), 그 아내들은 단정하고 악한 것을 말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한다(3:11).
- ⑤ 집사들은 그 자녀들과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3:12)
- ⑥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3:9).
- ⑦ 집사들은 집사의 직분을 맡기 전에 시험받아야 한다(3:10).¹²⁵⁾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집사직은 설교하거나 치리하는 역할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가난한 성도를 돌보며 구제하는 역할이 주어진 것이

121) J. A. 하지, 「교회정치 문답조례」, 6장, 103문.

122) 김길성, 「개혁주의 교회론」, 30.

123) J. A. 하지, 「교회정치 문답조례」, 4장, 65-66.

124) J. A. 하지, 「교회정치 문답조례」, 6장, 107문.

125) 로버트 L. 레이몬드, 「최신조직신학」, 1137.

다. 이 직무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수행할 중요한 책임이기 때문에 집사직은 항존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4. 결론

장로교 체계를 세운 칼빈은 4중직 즉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항존직을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칼빈의 장로교 체계를 따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항존직은 장로(목사)와 집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형룡 박사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칼빈은 에베소서 4장 11절의 다섯 가지 직원 중에 끝으로 두 직원 즉 목사와 교사를 교회의 정치를 주관하는 통상직원이라 하고 교사의 직무는 목사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12장 7절, 8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열명(列名)에서 「다스리는 자」와 「공물을 베푸는 자」라는 두 직원 즉 장로와 집사를 취하여 통상직원의 반열에 추가하였다. 동시에 그는 감독, 장로, 목사는 본래 같은 직분의 다른 이름들이라고 보았다(기독교강요, 4권 3장 4, 8).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는 이에 호응하여 말하기를 「교회에 통상적 또는 영구적인 직원들은 감독들 혹 목사들과 통상으로 치리장로들이라 칭하는 교인 대표자들과 집사들이다」라고 하였다 (3장 2조).¹²⁶⁾

칼빈은 교사와 목사를 구분하였으나 개혁교회는 이 둘을 하나로 보았다. 교사의 가르치는 직무는 목사의 직무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목사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명시하고 있다(정치 제4장 1조 6

항). 또한 「교회정치 문답조례」 55문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55문. 교회에 항상 존재할 통상직원은 무엇인가?
답. 교회에 항상 존재할 통상직원은 셋이니 목사와 장로와 집사이다.¹²⁷⁾

그 이유를 「교회정치 문답조례」 56문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56문.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항상 존재할 통상직원이 될 이유는 무엇인가?
답.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항상 존재할 통상직원이 될 이유는 저희가 행할 전도와 다스림과 구제하는 일은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항존 직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에 이 세 가지 직분의 책임과 자격과 선정방법을 자세히 가르친 것도 이 세 직분이 통상직원이 되어야 할 것을 실증한다.¹²⁸⁾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에 존속하는 날 동안은 교회의 책임과 관련하여 목사, 장로, 집사가 항존직으로 존속되며,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책무를 등한시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 외에 다른 권한을 가지려는 월권의 행위는 교회의 질서와 책무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직분자들이 각 지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충성이 필요한 것이다(고전 4:2).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책임있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가야 할 길이다.(*).

126) 박형룡, 「교의신학 교회론」, 136.

127) J. A. 하지, 「교회정치 문답조례」, 3장, 55문.

128) J. A. 하지, 「교회정치 문답조례」, 3장, 56문.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과잉금지원칙

김대준 변호사* 1)

목 차

1. 서론
2. 종교의 자유 일반
3. 종교의 자유와 헌법적 법익의 충돌
4. 결론

1. 서론

가. 코로나 초기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던 사랑OO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교단 소속의 S교회에 대하여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7월 모두 기각결정을 내렸다.

나. 종교단체에 대한 집합금지라는 행정조치를 넘어서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 위반죄로 형사고소하고,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사건들을 놓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 김대준 변호사 / 광주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전공 / 법학 부전공),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48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제38기), 법무법인 로드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한경 구성원변호사. 현, 학교법인 승실학원 이사, 칼빈대학교 고문변호사, 한국교회총연합회 법률고문, 서울경찰선교회 감사 등.

아닌지에 대해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 법원의 판결로 행정부의 일방적인 기본권 침해에 제동을 건 셈이다.

다.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종교의 자유와 종교단체의 예배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을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종교의 자유와 헌법적 법익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2. 종교의 자유 일반

가.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종교의 자유 보장과 종교와 정치의 분리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나. 종교의 자유의 내용에 관하여 '신앙의 자유', '종교적 고백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포함되고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적 의식 및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전파 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일찍이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종교적 목적으로 같은 신자들이 집회하거나 종교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말한다."라고 판시하였다²⁾.

다. 한편, 헌법에 따라 국교를 부인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우리나라는 그 동안 종교적 갈등이 종교 상호간, 이단종파와 정통종파 간의 교리적 싸움에 한정되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아울러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종교와 비종교, 종교와 국가, 종교단체 내부의 신앙인들 사이에서의 갈등의 문제로까지 그 갈등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3. 종교의 자유와 헌법적 법익의 충돌

가.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현재 2015. 4. 30. 2013헌마190, 공보 제223호, 729 [전원재판부].

나.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코로나 시기 때 종교단체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금지명령을 내림으로써 개신교를 포함한 종교단체들은 사상 초유의 대면예배 금지라는 종교활동의 중대한 침해 상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일반 국민과 종교단체의 대립은 물론, 종교단체 내부에서도 찬반논란이 벌어져 결국 개신교 교회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다수의 종교단체는 물론, 자영업자들까지도 정부의 과도한 행정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이나 아직까지 이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라. 외국의 사례를 보건대, 코로나 시기에 영국의 경우 성공회, 감리교단 내부에서 영국정부의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배를 중단한 사실이 있을 뿐 영국정부가 강제적으로 예배를 중단케 한 사례는 없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20명으로 제한되는 장례식을 제외한 모든 예배를 금지하였으나,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이를 일찌기 위법으로 판단하였다.

마.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원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대기업 종사자들에게 백신 미접종 시 마스크 착용과 매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해 사실상 접종을 의무화한 것에 대하여, 2022년 1월 1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

무화' 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백신접종의무화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0. 11. 25.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New York v. Andrew M. Cuomo, 592 U.S.(2020) 사건'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예배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 천주교 뉴욕 브루클린 교구가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거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다³⁾.

피신청인의 집합제한명령은 중립적이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하지도 않으므로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집합제한이 긴요한 국가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략~~ 예배 참석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택될 수 있는 보다 덜 규제적인 조치들이 존재한다. 수용인원이 수백명 또는 수천명인 교회에는 주 정부가 허용한 수보다 많은 사람이 참석한다고 하여 다른 많은 활동들에 비해 더욱 심각한 건강상 위협을 일으킨다는 것 또한 쉽게 믿기 어렵다.

신청인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였고, 교회에서 코로나 19 확산에 기여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주 정부는 신청인에 대하여 보다 덜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공중보전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바. 코로나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가 선언된지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는 어떠한 결정도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1헌버379 등)에 관해 내린 다음 결정에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을 인정한 것을 참조할 수 있다.

1. 병역종류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러한 병역을 부과할 경우 그들의 양심과 충들을 일으키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복무제가 논의되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 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과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3. 병역종류조항이 추구하는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은 대단히 중요하나, 앞서 보았듯이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병역종류조항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양심

3) 미국 연방대법원 2020. 11. 25.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New York v. Andrew M. Cuomo, 592 U.S.

적 병역거부자들은 최소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과 그에 따른 막대한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처벌하여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병역종류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사.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보건대, 코로나 시기에 종교단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집합제한을 함으로써 대면예배 자체를 금지시킨 정부의 행정조치는 다른 보다 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고려 없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아.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미국 연방대법원의 ‘2020. 11. 25.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New York v. Andrew M. Cuomo, 592 U.S(2020) 사건’의 결정문의 내용에서 보듯이 종교단체인 교회가 최선을 다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확진자 발생과 종교단체의 예배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의 자유를 위시한 종교의 자유를 보다 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려나 연구 없이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대면예배 자체를 제한하는 정부의 행정조치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소속의 S교회에 대해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비례원칙을 벗어나 지나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손해배상(구상금)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2728 구상금청구).

4. 결론

종교의 자유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공안전이나 질서유지와 같은 아무리 중요한 다른 헌법적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종교의 자유는 그 보장의 역사가 오래되고 인권의 핵심적인 가치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리함 점에서 지난 코로나 시기에 종교단체에 내려진 과도한 집합제한조치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에 대한 방역·진단·치료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각종 지원비 및 손실보상금을 부담할 의무를 지고, 생활지원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재량이 있다. 그럼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단체의 방역업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과태료 등 그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그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동을 한 경우 등과 같이 필요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비례의 원칙상 상당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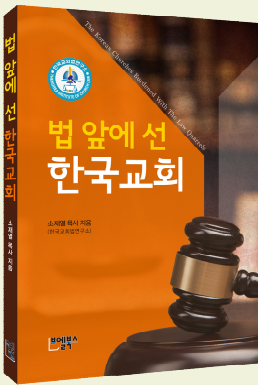
서평

『법 앞에 선 한국교회』

저자 : 소재열 목사

권창영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법학박사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자발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하였고,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 국교의 부

정, 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교회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교회는 다양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재산권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의 대표자 지위와 재산분쟁을 중심으로 법원에서 수많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는 종교단체라는 성격 외에도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교회재판에서는 민법상 법인과 총유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판례가 중요한 논거가 되고 있다. 교회를 운영하는 성직자 이외에도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도 교회법에 관한 기본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성직자나 교인의 입장에서는 복잡다기한 교회법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태산준령과도 같은 교회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

기 위해서는 성경교리와 법학 양자에 대한 깊은 연구와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교회법에 관하여 법학자와 법률가를 중심으로 전문서적이 출간된 적이 있다. 이와 달리, 목회 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법학을 전공한 교회법 전문가의 시각으로 서술한 서적은 찾기 어려웠다.

저자는 목사로서 성경해석과 설교를 위하여 1989년부터 말씀사역원을 운영하였고, 한국교회법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교회법에 관한 서적을 다수 출간하였고,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왔다. 위와 같이 화려한 경력을 갖춘 저자가 그동안 교회 분쟁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던 교회법에 관하여 목회자와 교인이 꼭 알아 할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귀중한 서적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항목도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 정관과 교단헌법, 담임목사와 교인의 지위, 교회와 교단, 교회·노회의 분열과 합병, 공동의회의 소집 등으로, 재판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핵심쟁점들을 망라하고 있다.

추상적인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순수법학서적과는 달리,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각에서 분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저자의 혜안에서, 교리와 법학 모두에 정통한 교회법 전문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커다란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매우 반갑고 아주 값진 의미를 지닌다. 모쪼록 저자의 한국 교회에 관한 열정에서 시작해 탄탄하게 써 내려간 이 저서에 담긴 지식과 경험이 한국 교회를 위해 소중하게 활용되고, 저자가 기울인 헌신적인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기를 기원한다. (*)



담임목사 방 성 일

하남교회

HANAM PRESBYTERIAN CHURCH

“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HANAM CHURCH ”



예배의 감격, 말씀과 기도의 부흥, 교제와 사랑, 나눔과 섬김으로
하남교회가 하남시 역사에 새 길을 내고 있습니다.

<http://www.hanam.or.kr/>

12936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45 (경기도 하남시 덕풍3동 827번지) 031-792-5004 FAX. 031-794-7566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한 기 승



선교하는 교회 · 교육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도하는 성도

행복누림과 영혼남음이 行傳으로 동탄(화성) 민족 열방을 福音化 주다산교회



개혁주의에 근거한
예수 스파크셀로
변화(Change)와
도전(Challenge)을
경험하는 교회

스파크셀이란?

- S** Scriptures(성경 중심)
- P** Prayer(기도의 경건 중심)
- A** Action(전도의 삶 중심)
- R** Revival(부흥 중심)
- K** Kingdom of GOD(하나님 나라 중심)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다산교회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60번지(10동사로 532) 동탄중교부지
TEL 031-8015-1091~3 / FAX 031-8015-1094

- 담임목사 권순웅
- 부목사 박주안 윤철관 이 석 신현호 장요원
- 강도사 이봉현 조요섭
- 전임전도사 권홍순
강희남 조동순 신영숙 고현주 김형자
- 협동목사 오승남 노정수
- 시무장로 이길섭 최순식 최창원 천영재 송재영 안원석
- 은퇴장로 김재복
- 협동장로 유인달 정남근 유영국 이훈구 정창균
황보병태 이경록

담임목사 권순웅

주다산교회 담임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서기 역임
총회다음세대문동본부장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사랑하며 섬기는 새에덴교회

다시 본질로!
Back to **Essence** Again!

다시 생명으로!
Back to **Life** Again!

다시 사명으로!
Back to **Mission** Again!



담임목사 소강석

“새에덴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도 한국교회의 연합과 세움,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대표적인 영적 역설적 슈퍼 처치입니다.”

소강석 목사는 대한민국 국민훈장, 마틴루터킹 국제 평화상을 수상하고 한국 목회자 최초로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미국 연방의회 의사록에 등재되었으며, 윤동주 문학상을 수상한 목회자요, 현대적 지성과 예술적 감성, 광야의 영성을 겸비한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으로 복음의 사회적 지평을 열어가고 있으며, 교회 생태계와 건강한 사회를 보호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새에덴교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00

TEL 031-896-1000 www.saeeden.kr

